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06월 27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개정면주민센터 담당자 : 이 영주 문의전화 : 063-454-7195)

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한*균 1973-09-15	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신발산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2019년 06월 21일

개정면

